

# 교직과정 이수과목 및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1) 교직과정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영역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6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비고
교직과정 이수 과목	교직이론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2학점) - 교육철학 및 교육사(2학점)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2학점)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학점) - 교육심리(2학점) - 교육사회(2학점)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학점)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2학점) - 교육철학 및 교육사(2학점) - 교육과정(2학점) - 교육평가(2학점)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학점) - 교육심리(2학점) - 교육사회(2학점)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학점) - 생활지도 및 상담(2학점) - 교육학 논술연습(2학점) (※「교육학논술연습」교과목은 교직이론 6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수강가능.)	
	교과교육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삭제	전공교과에 편성 이수 - 과학교육론 - 과학논리교육, - 화학교재연구및지도법	
	교직소양	4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 교직실무(2학점)	4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 교직실무(2학점)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 교직실무(2학점)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 교직실무(1학점) - 디지털교육(1학점 이상)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교육실습	- 교육실습(2학점)	4학점 이상 - 교육실습(2학점) - 교육봉사활동(2학점)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 교육봉사활동(2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물리화학 I, 유기화학 I, 무기화학 I, 분석화학, 물리화학 II 물리화학실험, 유기화학실험, 무기화학실험, 분석화학실험			
교직과정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 2회 이상		
교직과정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전공과목 80/100점 이상, 교직과목 80/10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전공과목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80/100점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단, 2016.3.1일 기준 2학기의 교직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교육	-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유아교육과 : 4회 이상 (※ 단, 20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기타	- (결격사유 확인)20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부터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필수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참조)				

※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2017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75)

- 신입학 : 신입학한 학년
- 편입학·재입학·전과 : 편입학·재입학·전과를 통하여 입학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편입학·재입학·전과학생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 교직과정 이수자 :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학년도-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교직과정 이수대상자는 2학년에 선발하는 것이 원칙임)

# 교직과목 이수시기

\* 2013학번 이후

교직영역	이수교과목 및 학점	이수시기(개설학기)	비고 (교원자격검정기준 이수학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2)	2-1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논술연습」의 경우 교직이론 학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교직이론영역 12학점을 모두 이수 후 수강 가능) ※ 교육과정 과목의 경우 23학년도 이후부터 수강가능
	교육심리(2)	2-1	
	교육철학 및 교육사(2)	2-2	
	교육사회(2)	2-2	
	교육평가(2) / 교육과정(2)	3-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3-2	
	교육학 논술연습(2)	4-1/4-2	
교직소양	교직실무(2)	3-1	6학점(3과목)(※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의 경우 2학년 때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3학년 때 이수 가능)
	특수교육학개론(2)	3-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	2-1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2)	4-1	4학점(2과목)
	교육봉사활동(2)	4-1	
계			22학점

\* 2024학번 이후

교직영역	이수교과목 및 학점	이수시기(개설학기)	비고 (교원자격검정기준 이수학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2)	2-1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논술연습」의 경우 교직이론 학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교직이론영역 12학점을 모두 이수 후 수강 가능) ※ 교육과정 과목의 경우 23학년도 이후부터 수강가능
	교육심리(2)	2-1	
	교육철학 및 교육사(2)	2-2	
	교육사회(2)	2-2	
	교육평가(2) / 교육과정(2)	3-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3-2	
	교육학 논술연습(2)	4-1/4-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2)	3-1	6학점(4과목)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	2-1	
	교직실무(1)	3-1	
	디지털교육(1~2)	2-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2)	4-1	4학점(2과목)
	교육봉사활동(2)	4-1	
계			22학점

## 학교현장실습

가) 학교현장실습 학교 조사서 제출

- 제출시기: 3학년 2학기

- 제출처: 본인 → 학과 → 단과대학행정실 → 본부(교육혁신과)

나) 학교현장실습 대상학교 선정

- 선정절차: 실습학교 사전수요조사 및 교육실습 사전승낙서(본인)를 참고하여 배정의뢰 후 확정  
(※최종실습학교는 사전 수요조사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다) 실습시기: 4학년 초, 1회에 한하여 4주간의 시행

라) 실습결과보고서: 실습 후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대학에서 1년간 보관)

마) 실습경비: 해당 학생 부담(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 별표3)

바) 산업체 현장 실습: 공업계 표시과목(중등학교 2급 정교사) 관련학과에서는 교육실습과 별도로 산업체 현장실습(4주 이상)을 반드시 이수

※ 공업계 표시과목(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 교육봉사활동

가) 3학년 1학기부터 교직이수 예정자는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을 선정하여 인트라넷으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나) 교육봉사활동 확정통보 후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학기 수업 종료일까지 교육봉사활동 현황 제출(교육봉사활동 기관 변경 및 추가 시 재신청 및 승인)

다)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제출 학생은 4학년에 수강신청을 하며, 수업일수 2/4선까지 기일 엄수하여 교육봉사활동 현황을 제출하며, '교육봉사활동'의 현황과 교과내용이 상이할 경우 종강일까지 추가로 실시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학점을 부여하고 성적은 P/N로 함

라) 교육봉사활동 일람표 및 확인서 작성

교육봉사→기관확인(확인서)→누적→수강신청→일람표 작성(학과확인)→교직과정 제출→학점인정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가) 실시 대상: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 선발자

나) 실시 시기: 매학기 초 1회씩 시행

다) 실시 방법: 추후 공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단, 시행일(2016.3.1.)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나) 실시방법: 추후 공지

## 성인지 교육

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해야 함.

- 유아교육과 : 4회 이상
-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단, 시행일(2021.2.9.) 당시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021년 2월 9일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나) 실시방법: 추후 공지

## 기타(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가) 실시대상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나) 실시내용 : 성범죄 이력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관련

다) 실시시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미해당 여부 확인

-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참조
- ※ 시행일(2021.6.23.) 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함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동일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시행일 : 2021. 6. 23.] 제22조의2